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6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김선교·김성원·김소희

서일준 · 정동만 · 최수진

구자근 · 김상훈 · 이헌승
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데 이용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전·이용·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경감·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수자원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공공복리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,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의 명시적 근거규정과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 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,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 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 및 제39조제3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수자원의 조사 ·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7조의2(비밀유지 의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 자원관리위원회 위원(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)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
 - 2.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

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"을 "제37조의2 각 호의 사람"으로, "제127조 및 제129조"를 "제129조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.

제3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7조의2(비밀유지 의무) 다음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
	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직무상
	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
	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
	<u>다.</u>
	1.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
	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
	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
	(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
	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
	한다)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
	2.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
	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
	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
	<u>임직원</u>
제38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	제38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
제)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	제) <u>제37조의2 각 호의 사람</u>
<u>해당하는 사람</u> 은 「형법」 <u>제1</u>	
<u>27조 및 제129조</u> 부터 제132조	
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	
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	
1.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	<u><삭 제></u>

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(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 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 한다)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

- 2.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임직원
- 제3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·2. (생략) <u><신설></u>

<삭 제>

세39조(벌칙)
<u>.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